

정관

2014. 07.

대한산업인력개발원
KOREA INSTITUTE
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
<http://www.kihrd.or.kr>

정 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기능인력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법인은 “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대한산업인력개발원”이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법인의 사무소는 청주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
2. 기업체의 근로자의 위탁훈련
3. 기타 인력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훈련
4. 전 각호에 부대 또는 관련된 사업
5.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다만,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목적에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, 이사회 의결을 얻어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.(근로자 자비교육훈련, 기업체 교육훈련 진단 및 교육훈련 컨설팅)
6. 직업안정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
7.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실시 및 관련사업

제5조(법인의 이익) 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.

제6조(차별대우의 금지) 이 법인의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2 장 재산 및 회계

제7조(재산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

제8조(재산의 관리)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인의 수지예산으로 정한 사항이외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9조(경비와 유지방법)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세계잉여금)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제11조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2조(임원의 보수)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법인재산대여의 제한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이 법인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1호,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 원

제14조(임원의 정수와 종류)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 : 5인 이상 10인 이내(이사장 1인 포함)
2. 감사 : 1인

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이사 : 4년, 연임할 수 있다.
2. 감사 : 2년, 연임할 수 있다.

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6조(상임이사)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중에서 선임한다.

제17조(임원의 선임방법) ①이사장,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이 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-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③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-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임원선임의 제한) ①이사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

②다음의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- 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5. 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③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.

④이사정수의 1인 이상은 직업훈련 또는 교육경험이 1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⑤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, 재무 및 회계 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.

제19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20조(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명)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제2항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
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21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

회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4 장 이 사 회

제22조(이사회 구성 및 기능등)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.

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

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23조(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
②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24조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25조(이사회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
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26조(이사회 소집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27조(서면결의) 이사회회의 의결사항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노동부장관의 허가·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없으며 서면결의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28조(정관개정)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9조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

결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0조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.

제31조(청산인)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2조(공고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“일간신문”에 공고한다.

제33조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기본재산 목록

【기본재산 총괄표】

(단위 : 원)

구 분	금 액	비 고
기본재산	①전세보증금 : 300,000,000원	전세권설정액
	③정 기 예 금 : 10,046,134원	예금잔액증명서
소 계	310,046,134원	
합 계	310,046,134원	

【기본재산 내역표】

(단위 : 원)

소 재 지	자산 분류	면적(m ²)	평가액	비고
①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600-20번지 2층 3층 4층	전세권	592.13	300,000,000	
③신한은행 충북영업부금융센터	정기 예금	1매	10,046,134	
합 계			310,046,134	

2014년 07월 19일

위사실을 확인함.

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대한산업인력개발원 이사장

재단법인 대한산업인력개발원
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600-20

이사장 지 명 구

이 사 김 준 호

이 사 정 구 현

이 사 최 병 록

이 사 류 영 호